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1
제정일자	2019.04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2

2019.04.01.제정 2022.04.15.개정 2022.11.24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사립학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)에 따라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(적립금) 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운용의 계획에 관하 사항
- 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3조(구성)**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11.24.>
 - ②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 - 1. 교원 2인 이상
 - 2. 직원 2인 이상
 - 3. 재학생 2인 이상
 - 4. 법 시행령 제14조의6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이상
 - 5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랍
 - <개정 2022.11.24.>
 - ③ 간사는 사무처 회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.
- 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(다만,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).
- 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91
제정일자	2019.04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2
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7조(서면결의)**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- 제8조(주의의무) 심의회의 위원은 기금의 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②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③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면책) 심의회의 위원은 기금의 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리·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10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)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부서는 해당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기타)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기 승인된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2018학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기금의 운용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